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60141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https://artintaera.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6-01-29

[대표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1-29

아트인태라 정보공개서

아트인태라 본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귀하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341 상가동 B119호

아트인태라

Tel : 032-1234-987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트인태라	아트인태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341 상가동 B119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2023-07-01	김태은	0507-1374-7996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79-95-0191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거나, 경영중인 사실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트인태라	해당없음
상 호	아트인태라 OO교육원	당사는 해당 지역명/아파트단지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아트인태라	상표권 출원번호: 40-2025-0213045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직전 3개 사업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023년				31,775		
2024년				83,225		

해당 근거자료는 본 정보공개서 [별첨 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태라아트	김태은	대표	2023.07. ~ 2025.12.	태라아트 대표	경영 전반
아트인테라	김태은	대표	2025.12 ~	아트인테라 대표	경영 전반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과 동종업종 1년 이상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아트인테라] 가맹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12-31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 동안 [아트인태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출원/등록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아트인태라	41류	2025.11.17. 출원	출원번호: 40-2025-0213045 등록번호: -	김태은	해당없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아트인태라]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개시 예정

2. [아트인태라]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트인태라	아트인태라	김태은	가맹사업 개시 예정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341 상가동 B119호

3. [아트인태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트인태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교육	미술교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트인태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아트인태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아트인태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트인태라]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귀하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귀하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해당없음
서울	-	-	-	-	-	-	-	해당없음
부산	-	-	-	-	-	-	-	해당없음
대구	-	-	-	-	-	-	-	해당없음
인천	-	-	-	-	-	-	-	해당없음
광주	-	-	-	-	-	-	-	해당없음
대전	-	-	-	-	-	-	-	해당없음
울산	-	-	-	-	-	-	-	해당없음
세종	-	-	-	-	-	-	-	해당없음
경기	-	-	-	-	-	-	-	해당없음
강원	-	-	-	-	-	-	-	해당없음
충북	-	-	-	-	-	-	-	해당없음
충남	-	-	-	-	-	-	-	해당없음
전북	-	-	-	-	-	-	-	해당없음
전남	-	-	-	-	-	-	-	해당없음
경북	-	-	-	-	-	-	-	해당없음
경남	-	-	-	-	-	-	-	해당없음
제주	-	-	-	-	-	-	-	해당없음

8. [아트인태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트인태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귀하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0	해당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아트인테라]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아트인테라] 광고 또는 판촉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할 예정이므로, 가맹금 예치의무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후 해당 내역 발생 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할 예정이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후 해당 내역 발생 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트인테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차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당사는 최초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의거하여, 귀하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수령합니다.

1) 최초 가맹금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최초 가맹금은 점포 타입별로 다양하며,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내역	금액			가맹금 반환 조건	반환 불가 사유
	학원	교습소	홈스쿨		
가입비	7,700	5,500	3,300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입문교육비	2,200	2,200	2,200		

2) 계약이행보증금

당사는 가맹사업에 착수를 위하여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로서 계약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 예정	계약종료 시 손해배상액 등을 정산 후 잔액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내역	금액		
	학원	교습소	홈스쿨
가입비	7,700	5,500	3,300
입문교육비	2,200	2,200	2,2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1,000	1,000
TOTAL	10,900	8,700	6,500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영업개시일 이후 수령할 예정이므로, 예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그 밖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아트인테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간판/인테리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약 10평 기준)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불가 사유	비고
TOTAL		20,900	약 1,760			
인테리어	협력업체	11,000	약 1,100	계약 시 협의결정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인테리어 기본 공사
가구/비품	협력업체	6,600	약 660			테이블, 의자, 유니폼, 메뉴판, 쓰레기통 등
간판/사인물	협력업체	3,300	-			내/외부 간판, 실사물, 액자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 또는 점포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점포 실측 후 귀하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점포입지 및 지역, 점포규모, 점포구조, 물가인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기 금액 또는 지급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점을 위한 필수설비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필수설비를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시공 시작 3일 전까지 설계도면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고, 귀하는 시공 매뉴얼 및 도면 점검 관리감독 등에 대한 **기획관리비용(감리비)으로 [3.3 m²당 330 천원(VAT 포함)]**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영업개시일 이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미술 또는 유아교육 관련 학사학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강사)	- 강사 입문교육 수료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트인태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월	익월 5일	-	홈스쿨 교습소/학원
		275/월	익월 5일	-	
광고 부담금	가맹본부	광고별 부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
판촉 부담금	가맹본부	행사별 부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설치 전 100%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간판변경 비용					있으며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
수시 및 정기 교육비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육개시 전	해당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파견교육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상이	교육개시 전	해당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스템사용료	협력업체	10/月	별도 계약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12%/年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가맹사업 개시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통해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교육관리	표준 교재 사용여부 및 동물보호 규정 준수 점검	수시	-
회계처리	귀하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

당사는 귀하의 위생, 수업, 원생등록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재가맹비 [330 천원(VAT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종료 이후 경업금지의무

귀하는 [아트인태라] 가맹계약 종료 이후 12개월간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일한 업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당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가맹계약 도중, 계약관계를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당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는 이를 승인 할 것입니다.

다만, 미술교육 사업의 특성상 양수인에게 새롭게 당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양도인과 가맹계약 합의해지 후,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공급받은 물품의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물품공급대금, 위약금 등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도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즉시 상환할 것입니다.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교육 매뉴얼 및 영업관련 자산 일체) 등 당사의 소유물 또는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본 정보공개서의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가맹사업 개시 이전으로, 현재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기에 본 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트인테라]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트인테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해당 내역 발생 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가 [아트인테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용역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1차 구두 경고 2차 서면 시정요구 3차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일부 고객에 대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받는 상품/용역	제한내용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또는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용역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경고 2차 교재공급 중단 3차 가맹계약 해지

그 밖에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	아트인태라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홈스쿨	초등학교 인근 1,000세대 아파트단지	가맹계약서 상, 지도 표시
교습소	초등학교 인근 2,000세대 아파트단지	
학원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귀하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귀하에게 서면 통지 → 귀하 동의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가맹본부가 양측 귀하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귀하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트인태라]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귀하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강사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아트인테라>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최초가맹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로열티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의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의 "구입강제품목"을 무단으로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29조)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수정해야 할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변경합의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변경합의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미술교육업의 특성상 양수인에게 새롭게 당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양도인과 가맹계약 합의해지 후,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양수인에 대해 양도 승인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양수인이 당사와 동종의 직영점 또는 동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양수인이 [아트인테라]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당사와 협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아래 제한 기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한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지역	경업허가 절차
가맹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국내 전 지역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심사 → 허가 여부 통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트인테라]의 수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하루 5타임 (권장)	월 20일 (권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영업장 근무 여부에 대해서 점포 타입별로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 타입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홈스쿨	0명	직접 강의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교육업 관련 규정 준수
교습소	1명	직접 강의	불가	
학원	1명 이상	-	가능	

교육업 관련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스쿨 및 교습소 타입은 반드시 귀하가 직접 근무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장 등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귀하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귀하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합니다.

구분	광고/판촉행사 성격	부담 비율		분담절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SNS 홍보 (메타광고/네이버 블로그/카페 등), 전시회 개최
	수강생 모집 (매출활성화)	10%	90%		
판촉행사	수강생 등록비 D/C	-	100%	지역별 특색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	
	교재 및 교구 판매가 D/C	-	100%		
카드사 멤버십 제휴	제휴행사	-	100%	카드사 제휴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 비용분담의 대상이 되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50% 이상 동의 시 광고행사를 집행합니다. (가맹점 모집 광고가 병행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총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당사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70% 이상 동의 시 판촉행사를 집행합니다. 다만, 카드사 제휴행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70%에 미달할 시 판촉행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수강생 등록비 또는 교재 및 교구 판매가 D/C 등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당사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상호, 간판, 그 밖에 <아트인테라>영업표지와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일당 금 이십만원(₩ 200,000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 2) 가맹점사업자가 악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금 이천만원(₩ 20,000,000원) 을 지급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6) 가맹점사업자의 임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남은 잔여 계약 개월 수 * 100만원
- 7)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의 "구입강제품목"을 무단으로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8)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창업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점포개발 담당자 배정	14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 시, 7일)	IV-1-1)~4) 참고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실측 및 인테리어계약	- 간판/인테리어 견적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 스케줄 확인	1일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1일	
교육업 인·허가	- 아동교육업 인·허가 교육청 서류제출	10일	
공사 착수 및 교육 실시	- 간판/인테리어 공사 실시 - 미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실시	20일	
집기/초도물품 입고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	
가맹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직영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점포 타입 및 규모, 시공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후화의 기준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주는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귀하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귀하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귀하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협의를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의 권유 → 귀하의 동의 → 점포환경개선 실시 ○귀하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서면 회신) → 점포환경개선 실시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또는 지원금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귀하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 지도 및 시정 권고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트인태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교육 (오프라인)	- 아트인태라 교육 가치관 - AI 미술 기법 - 생태미술 기법 - 심리미술 기법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입문교육 (온라인)	- 원생모집 마케팅 - 세무회계관리	온라인교육		
보수 교육	필요 시, 보수교육 진행	오프라인 실습 또는 온라인	별도 협의	수시교육

보수 교육의 경우, 강사 보충교육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되며, 추가 교육에 따른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트인태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입문교육	7일(온라인 포함)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별도 협의	별도 협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입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과 동종업종 1년 이상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아트인태라] 가맹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

※ 아래 품목 및 가격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구입강제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구입권장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